

교 원 의 지 위 향 상 및 교 육 활 동
보 호 를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교육연구비의 지원 대상을 유·초·중학교 근무 교원에서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확대(안 제9조제1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교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)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호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근무하는 교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교육연구비용의 지원) ① 관할청은 <u>교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)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	제9조(교육연구비용의 지원) ① - ----- <u>「유아교육법」 제7조</u> <u>각호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</u> <u>조 각호에 근무하는 교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79